

기업 지원금

대체인력 지원금

'25년 확대

-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**육아휴직**을 허용하고,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**월 120만원 지원**



업무분담지원금

'25년 확대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**육아휴직**을 허용하고,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**월 20만원 지원**



육아휴직 지원금

'25년 확대

-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**월 30만원 지원**
- 12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연속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**매월 200만원 지원**
- 남성 육아휴직**을 허용한 경우, 기업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**매월 10만원** 추가 지원

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**월 30만원 지원**

일·육아 동행 플래너

일·육아지원제도 활용이 어렵다면?
플래너가 기업 맞춤형 비 서비스를 제공!



근로자 대상

출산·육아지원정책
자세히 알아보기 >



기업 대상

출산·육아지원정책
자세히 알아보기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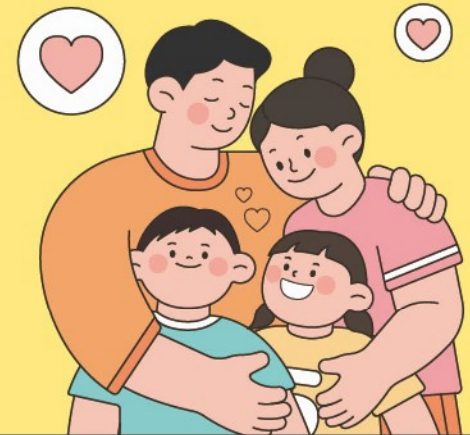


N

2025년부터 달라지는

근로자·사업주 모두를 위한

출산·육아 지원제도 가이드북



임신기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'25년 확대

-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임신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

*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 받은 경우, 임신 전기간 단축 가능



난임치료휴가

'25년 확대

-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) 사용 가능
-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



출산기

출산전후휴가

'25년 확대

- 출산 전·후로 90일(다태아 120일) 휴가 사용 가능
*대기업 근로자는 30일,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급여(월 최대 210만원) 지급
- 미숙아 출산 시, 출산전후휴가 100일 사용 가능



배우자 출산휴가

'25년 확대

-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가능
-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
- 최대 4번에 나눠 (3회 분할) 사용 가능
-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



육아기

육아휴직

'25년 확대

-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
*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
-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(부부 합산 월 최대 500만원)
* (1~3월) 최대 250만원 (4~6월) 최대 200만원 (7월~) 최대 160만원



자녀 생후 18개월 내,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시,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(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)

* (1개월) 250만원 (2개월) 250만원 (3개월) 300만원 (4개월) 350만원 (5개월) 400만원 (6개월) 450만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'25년 확대

- 12세(초6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 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경우 월 최대 55만원 지원
-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 (종전 3개월)